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신자 재무팀장  
(경유)

제목 **물품 입찰공고 정정 요청(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

1. 관련근거

- 가. 물품 입찰공고 20171011103-00(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 2017.10.17)
- 나. 시설안전팀-6296호(계약의뢰[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 2017.10.16)
- 다. 전화민원(주식회사 대진 / 조은애 / 010-3133-XXXX, 2017.10.20)
- 라. 전화민원(주식회사 일해CMP / 장창근 / 010-8903-XXXX, 2017.10.20)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에 대한 물품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유 : 장비의 최소 크기 지정 및 건전지 사양 제약에 따른 특정업체 (국산제품) 입찰 제한

나. 변경내용

1) 물품구매개요서 “2.구매개요 및 현황 가. 개요 2) 내용” 중 “장비크기”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장비크기	2.07*0.81*2.02(m)	L2.3(m)이하*W1.0(m)이하*H2.1(m)이하	제품시방서 크기로 변경

2) 제품시방서 “<특별사항> 제2조 가.설비사양” 중 배터리 규격 및 문구추가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배터리	DC24V,280A/H 이상	DC24V,210A/H 이상	
문구삽입	“ 없음”	※ 작업대에서는 2명 이상이 작업공구 및 작업자재 등을 적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가.설비사양” 하부에 삽입

- 붙임 : 1. 물품구매개요서(변경) 1부.  
2. 제품시방서(변경) 1부. 끝.

# 시 설 안 전 팀 장

과장

김두영

팀장

김태환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10/20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팀-6389 (2017.10.20) 접수 ()  
우 138-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전화 02-3435-0544 전송 02-3435-0394 / [kdy21231@garak.co.kr](mailto:kdy21231@garak.co.kr) / 공개

[붙임 1]

# 물 품 구 매 개 요

1. 건명 : 가락몰 고소작업대 구매
2. 구매개요 및 현황

가. 개요

- 1)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가락몰 판매동
- 2) 내 용 : 고소작업대 1대(1식)

품명	최대 작업높이	최대 작업대높이	최대 적재중량	장비크기	비고
고소작업대 (자주식,시이저리프트)	7.8(m)	5.8(m)	227(kg)	L2.3(m)이하*W1.0(m)이하*H2.1(m)이하	

※ 세부사양 제품시방서 참조

- 3)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4) 소요예산 : ₩17,6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예산현황 : 시설관리공기구구입[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공기구비품]

(단위: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시설관리공기구구입	39,073,000	16,655,000	11,077,260	17,600,000	10,395,740

3. 관급자재 내역 : 없음
4. 설계자 소속 : 시설안전팀 과장 성명 김 두 영
5. 설계심사자 소속 : 시설안전팀 부장 성명 신 종 철
6. 감독원 소속 : 시설안전팀 과장 성명 김 두 영
7. 검사원 소속 : 시설안전팀 과장 성명 김 두 영  
시설안전팀 팀장 성명 김 태 환
8. 기 성 고 지급횟수 : 없 음
9. 하자보수보증금 기간 : 계약금액의 2%(제조의 경우 3%), 1년
10. 지연 배상금율 : 0.8/1,000
11. 설 계 서 열람장소 :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팀

[붙임 2]

# 제 품 시 방 서

## <일반사항>

- 제1조 본 제품시방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에 적용한다.
- 제2조 용어 정의  
가. "발주기관"라 함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제작·구매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검수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본 제품시방서가 타 전문시방서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제품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제품시방서에 준하여 검수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제작·구매하여야 하며, 본 제품시방서에 표기된 품질 및 기능 등에 동등 이상으로 제작·구매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약상대자는 본 건(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의 설계서 및 제품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검수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 본 물품은 플랫폼리프트(품명번호22101802)를 제조 또는 판매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를 서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 제6조 본 제작·구매 건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
- 제7조 계약상대자는 검수원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검수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검수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을 제작·구매 납품하여야 한다.

## 제9조 공급범위

가. 발주기관 : 규격 및 현장 납품여건 확인 및 제공

나. 계약상대자 : 제작·구매(기계가공포함), 납품, 시험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 1) 자재 공급범위

- 장비사양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 설치·운전에 필요한 특수공수 및 자재

### 2) 기타업무

- 현장까지 수송(가락몰 지하3층 건축실 앞)
- 현장 시운전
-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 성능시험 및 검사

제10조 고소작업대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구매하고 제작·구매 시에 시행되는 시험 및 검사 등은 관련법규,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관계서류 일체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고소작업대는 기능 및 사용상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제12조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절치 않은 고소작업대에 대해서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제작·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 자재의 입고 및 보관

계약상대자는 제작·구매품 입고 시 운반계획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포장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하여야 하고, 가공 부분은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그 외 도서 요구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1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예정공정표

나. 도면 및 DATA SHEET(필요시 제품 카달로그 대체) 등

## 제15조 납품

제작·구매 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가. 납품서
- 나. 사진첩
- 다. 제작증명서(구매의 경우 생략)
- 라. 품질보증서
- 마. 검사성적서
- 바. 안전인증서
- 사. 제품사용 설명서(또는 정비 설명서 등)
- 아. 제작·구매 품의 납품에 필요한 서류일체, 발주기관 검수원이 제작기간 중 지시한 자료 등

#### 제16조 기타사항

- 가. 본 제품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 나. 기타 인수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제품시방서, 승인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 하지 않은 사항은 검수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른다.
- 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 하며 검수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 가. 본 물품의 제작·구매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 제작·구매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 및 감독원은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별사항>

#### 제1조 일반사항

- 가. 적용범위 : 가락물 고소작업대 구매에 적용한다.

- 나. 품 명 : 자주식 고소작업대(시이저리프트) 1대
- 다. 기 능 : 공구와 작업자를 원하는 높이의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고소작업용 기계
- 라.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지하3층
- 마. 납 기 :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
- 바.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 제작·구매 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구매 하여야 한다.

제2조 고소작업대 제작·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고소작업대 제작·구매는 이를 충족되도록 제작·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비사양

- 형 식 : 자주식 고소작업대(시이저리프트)
- 수 량 : 1대
- 최대 적재중량 : 227(kg)이상
- 최대 작업대높이 : 5.8(m)이상
- 장비 크기 : L2.3(m)이하\*W1.0(m)이하\*H2.1(m)이하
- 등판능력 : 20% 이상
- 배터리 : DC24V, 210A/h 이상

※ 장거리 이동시에는 고소작업대 외부에서 작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방지).

※ 작업대에서는 2명 이상이 작업공구 및 작업자재 등을 적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제3조 기본 지급 품목

자동 배터리 충전기, 야외보완용 덮개(천막), 사용자 매뉴얼(한글), 간단정비용 공구 등

제4조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제작·구매 품에 대하여 본 제품시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나. 제작·구매 품의 납품 후라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한 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확인 시험을 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시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빨리 결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치 않은 제작·구매 품의 납품에 대하여 재 제작·구매 및 교체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 제5조 기타사항

가. 납품장소는 본 제품시방서 일반사항 제9조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구매 품의 납품시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각 규격별로 구분하여 포장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 및 납품,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제품시방서에 특정회사 제품 사양 등이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그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 제품시방서에 제시된 모든 규격에 대하여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